

감사원

현지조치

제 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구로구

조치기관 서울특별시구로구

내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_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이하 ‘제재대상 건설업자’라 한다)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5. 제재처분시기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정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 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2015. 11. 18. 국토교통부에 제재대상 건설업자의

처분일자 연기 가능 여부를 질의(구로구청 건설관리과-24484)하자,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7일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신(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7947)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구가 제재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제재대상 건설업자가 영세하다는 사유 등으로 위 건설업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분일자를 연기 요청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2. 26.~3. 16.) 중 2015. 1. 1.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 관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①②가 2015. 8. 26. 신규 계약체결을 위해 처분일자 연기를 요청하자 청문일자인 같은 달 31일로부터 110일이 지난 같은 해 12. 20.부터 영업정지가 되도록 하는 등 [별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연내역”과 같이 2015년 이후 영업정지 처분 총 38건 중 20건을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110일까지 지연처리하였고 이중 ③④ 등 2개 업체는 [표]와 같이 지연처리 기간 중에 6건, 계 1,072백만 원 상당의 신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일실하였다.

[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연기간 중 계약체결 내역

(단위: 천 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청문일자	효력발생일	계약체결내역		
				체결일	공시명	금액
⑥⑥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자본금)	2015. 10. 5.	2015. 10. 21.	2015. 10. 16.	ㄱ	225,500
				2015. 10. 16.	ㄴ	41,800
⑦⑦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2017. 7. 7.	2017. 8. 1.	2017. 7. 24.	ㄷ	316,000
				2017. 7. 25.	ㄹ	159,640
				2017. 7. 25.	ㅁ	174,330
				2017. 7. 25.	ㅂ	155,229
				계(6건)		1,072,499

자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주의)

[별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연 내역

(단위: 일)

연번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청문일자 (A)	효력발생일자 (B)	청문일로부터 지연일 (A-B)
1	-	일괄하도급 위반	2014. 12. 16.	2015. 2. 1.	47
2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5. 1. 20.	15. 2. 22.	33
3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5. 1. 20.	2015. 2. 22.	33
4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5. 3. 19.	15. 4. 13.	25
5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5. 8. 31.	2015. 12. 20.	110
6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5. 9. 9.	15. 10. 13.	34
7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5. 9. 30.	2015. 10. 19.	19
8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2015. 10. 5.	15. 10. 21.	16
9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5. 10. 5.	2015. 10. 21.	16
10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5. 7. 31.	2015. 11. 9.	101
11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5. 11. 9.	2016. 1. 5.	57
12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기술자)	2015. 11. 30.	2015. 12. 21.	21
13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5. 12. 15.	2015. 12. 30.	15
14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6. 11. 9.	2016. 12. 24.	45
15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자본금)	2016. 12. 14.	2017. 1. 16.	33

연번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청문일자 (A)	효력발생일자 (B)	청문일로부터 지연일 (A-B)
16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기술자)	2016. 12. 14.	2017. 1. 20	37
17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7. 1. 6.	2017. 1. 23.	17
18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6. 12. 28.	2017. 1. 23.	26
19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7. 1. 6.	2017. 1. 23.	17
20	②②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2017. 7. 7.	2017. 8. 1.	17

자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출자료 재구성